

## 안전진단대행업·안전관리대행업 휴업(폐업) 신고서

\*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휴업 또는 폐업하는 법인	상호(명칭)	설립 연월일	
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
휴업 또는 폐업할 사업의 종류 및 내용			
휴업의 경우 그 기간			

「해사안전법」 제22조 또는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·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(폐업)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(전화번호 : )

해양수산부장관( 지방해양수산청장) 귀하

해양수산부 (지방해양수산청)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